

1.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9,815,882	19,794,476
일반회계	612,827,135	18,384,814
특별회계	46,988,747	1,409,662
기타특별회계	46,988,747	1,409,662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5,941,109	178,233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05,975	105,179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79,500	8,3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1,046	19,23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95,449	137,8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70,296	26,10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0,928	21,3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90,011	146,700
수질개선특별회계	21,534,433	646,033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3,542,986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28,042,986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